CEO가 알아야 할 2024년 주요 개정 세법

NEWS LETTER for CEO

1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시 종전에는 증여재산가액 60억구간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2024년부터는 120억원까지 저율과세구간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연부연납기간은 1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사후관리 기간 업종변경 요건도 대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대폭완화되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증여재산가액	세율	증여재산가액	세율
증여세 저율과세구간 상향	0~10억원 이하 10~60억원 이하 60~600억원 이하	10억 공제 10% 20%	0~10억원 이하 10~120억원 이하 120~600억원 이하	10억 공제 <mark>10%</mark> 20%
연부연납 기간확대	5년		15년	
사후관리기간 업종변경 완화*	중분류 내 변경 허용		대분류 내 변경	허용

^{*} 가업상속공제도 해당

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무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경우 관련 권리를 기업이 가져가는 대신 해당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종전 연간 500만원 비과세 한도가 2024년부터 7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제외되며, 중소기업은 해당 지출비용에 대해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단, 지배주주 등 제외)

3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50%(그 외 40%)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바이오의약품,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매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등 6개 분야 54개 기술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2023.7.1 이후 지출투자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미래차 등 13개 분야 262개 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추가

4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2024년부터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가 신설됩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한 기업은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받을 수있고 이후 2년 동안에는 50% 감면받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을 1채 취득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을 양도 한 뒤특구로 이전하면, 수도권 부동산 양도로 얻은 차익은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1) 특구내 창업, 사업장 신설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소득 • 법인세감면 (감면 한도)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 x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천만원) (최저한세) 50% 감면기간만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신설>	2) 특구 이전기업, 주민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혜택) 일반주택, 농어촌주택을 각 1채 보유한 1세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3)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내 부동산 대체 취득시 과세특례 3년 이상(중소기업 2년) 사업 영위, 수도권내 사업용 부동산을 '26.12.31일까지 양도시 기획발전특구내 대체 취득한 사업용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5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율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이던 것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됩니다.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공제율이 적용됩니다.

ᄀᆸ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기본공제 상향	추가공제 신설	최대공제율	
대기업	3%	5%	10%	15%	
중견기업	7%	10%	10%	20%	
중소기업	10%	15%	15%	30%	

6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해외에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기존 7년에서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아울러 유턴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 보조금 비율로 상향됐으며, 보조금을 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의 신규 해외투자 제한 요건도 없어졌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세액감면 확대	5년 100% + 2년 50% 감면	7년 100% + 3년 50% 감면
업종요건 완화	국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 간 업종 세분류 동일	관련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시에도 인정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확대

2024년부터는 기존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용어 변경됩니다. 아울러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한도를 10% 추가 인정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JIOOD★IIII	A: 8	한도(A)+수입금액별 현 중소기업 3,6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	ŀ도(B)	전통시장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В:	수입금액 구간	한도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한도)의
		100억원 이하	0.30%	10% 추가손금산입
			0.20%	
		500억원 초과	0.03%	

8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대상) 내국인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영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 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신설>	*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특례) <mark>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mark>

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_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1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합니다. 2024년부터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대상업종	변호사, 병의원 등 125개 업종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 추가

10

혼인증여공제, 출산증여공제 1억원 신설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기준 전 2년, 이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입니다.

구분	10년 단위 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성년)	5,000만원
직계비속(성년) + 혼인공제 1억원 + 또는 출산공제 1억원	1억 5,000만원
직계비속(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존속	5,000만원
기타친족 (사위, 며느리 등)	1,000만원



11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강화

2024년에는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됩니다. 1억 원 기부 시 기존에는 2,85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세법 개정을 통해 355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구분	개정	d 전	개정 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기부금 40%
용역기부 기부금	기부금 인정대상	특별재산지역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인정확대	용역가액	1일 5만원	1일 8만원

1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및 근로자 출산 양육지원금액 손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

2024년부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자녀양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10만원 이내에서 월20만원 이내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액에 대해 손금 또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개정 전	개정 후
근로자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mark>월20만원 비과세</mark>
기업	출산·양육지원금 관련 규정 없음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근거 마련